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17440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허금탁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이보라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변론 종결 2020. 4. 21.

판결 선고 2020. 5.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8,440,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473,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E목공소)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제1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한 자이다.

나. 원고는 F과 인천 남동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15.부터 2023. 3. 15.까지, 보장내용 화재손해(건물, 비례), 보험가입금액 8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H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제2건물의 2/3 지분, I는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11. 13. 피고 B과 이 사건 제1건물 1층 약 198.34㎡(이하 'E목공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009.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8. 12. 1. 00:39경 E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목공소가 전소되고, 이 사건 제2건물 일부가 소실 혹은 그을음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2. 검토

다. E목공소 내 발화원인으로는 인적인 발화가능성, 시설물 및 존치물 상에서 발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인적 발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가능성이 낮

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화재의 경우 시설물 및 존치물에서 발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다만 E목공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대부분의 전선이 화염에 용융된 상태이며, E목공소 공간 중앙에 존치된 화목난로의 연소실에서 연소잔해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현장조사만으로 화재 당시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함.

마.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 및 존치물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 변형, 소실 및 이동된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함.

3. 감정결과

가.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연소형상,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E목공소 공간 내부로 한정 가능할 것임.

화재현장조사서

발화지점 판단

C, J1)에 설치된 CCTV 영상 최종 분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을 E목공소로 추정함.

화재원인 검토

1. 전기적 요인: 발화지점 인근에서 수집된 미확인 전기배선 분석 시 망울 부분에서 수지상 조직이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통전 중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 발화가능성 있음.

2. 부주의, 기계적 요인, 방화가능성,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 각 배제 가능

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원고는 2019. 5. 3. F에게 247,764,489원을, I에게 123,882,244원 총 371,646,733원을 지급하였고, 손해사정에 5,826,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또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B은 E목공소의 점유자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화재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연소형상, CCTV 영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을 E목공소 공간 내부로 한정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최초 발화지점은 E목공소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② 위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화지점 인근에서 수집된 미확인 전기배선을 분석한 결과, 통전

중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E목공소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인적 부주의, 방화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로 인한 요인도 배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④ E목공소는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작업장 내부에 톱밥, 목재 등이 있었고, 이러한 가연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1, 2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어 있고, 양자는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였다.

⑥ 피고 B은 위와 같이 E목공소가 화재에 취약한 여건 또는 구조라는 점을 충분히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로 방염, 내화 소재로 건물을 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소가 되지 않도록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F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제682조에 따라 F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기 지급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점유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점유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E목공소를 제외한 이 사건 제1건물의 점유자로서 내화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해자 중 하나 이지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E목공소와 인접하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피고 B)

가. 손해액의 산정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이 사건 제2건물의 손해는 M동 359,261,986원, N동 32,796,982원, O동 4,042,270원 총396,101,23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9. 5. 3. F에게 247,764,489원, I에게 123,882,244원 총 371,646,733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손해사정료 5,826,400원 역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위 법률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 2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 B 역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B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F 등에게 158,440,495원(= 396,101,238원 × 0.4, 원 미만 버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보듯 원고는 2019. 5. 3. F에게 247,764,489원, I에게 123,882,244원 총 371,646,733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보험금 중 위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58,440,49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5. 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0.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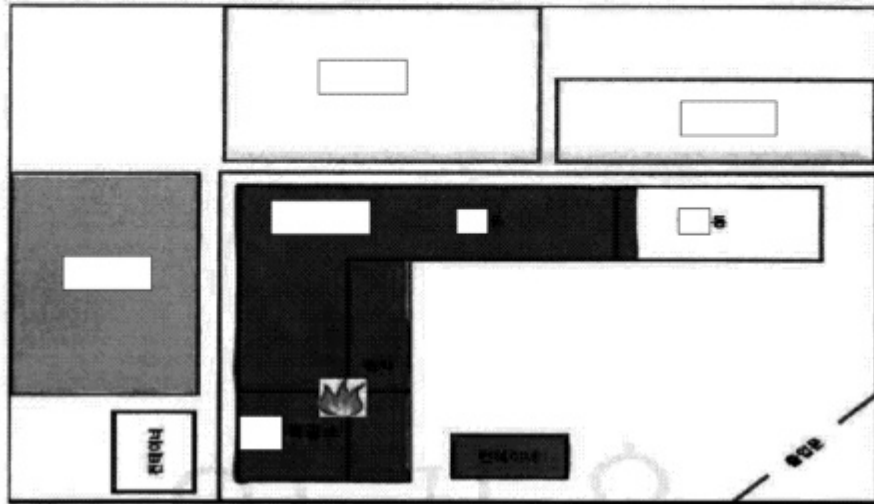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예지

별지

도 면



1) 이 사건 제1건물에 인접하여 J, K, L 등이 있었다(별지 도면).